

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 제 4 파 산 부

### 결 정

등본입니다.

2016. 12. 16.

법원사무관 강호성



사 건 2016회합100149 회생  
채 무 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 
창원시 성산구 남면로381 (내동, STX중공업(주) 본사)  
법률상관리인 정태화

### 주 문

1.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'2016. 12. 23. 10: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'에서 '2017. 1. 13. 10: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'으로 변경한다.
2. 관리인, 채무자,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, 제232조 제2항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.

### 이 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4조, 제232조 제1항, 제162조,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6. 12. 15.

재판장

판사

김정만



판사

황진구



판사

최응영

